



경기도의회 제393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경기도지사 제출
제90번

2026. 9. 7.(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요구이유

- 가.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역량있는 청소년 법인 및 단체 등에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 나. 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북부) 등
- 나. 사업 추진 연혁

연번	위탁기간	수탁기관	도의회 보고/동의	비고
1	'18.10.~'20.12.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	지정
2	'21.1.~'23.12.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동의	제347회 임사회
3	'24.1.~'26.12.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보고	

다.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근 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1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 2) 필 요 성
 -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자격과 경험, 지식 그리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 (자립지원관 운영)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경제·취업·건강·일상 등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LH 청년임대·주거복지사업 등 연계를 통한 주거지원 및 취업 연계(교육, 인터십) 기간 중 생계비 지원 등
-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저축액(월 1~10만원)의 2배를 추가 적립

마. 위탁사업비: 매년 949,500천원(국비 163,500천원, 도비 786,000천원)

- (국·도비) 인건비 390,000천원, 운영비 60,000천원, 사업비 73,000천원
 - (도비)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160,000천원, 자립두배통장 266,500천원
- ※ 매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내시 및 도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바.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기 능 :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으나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
 - 인 력 : 총 8명(시설장 1, 자립지원요원 7)
 - 권 역 : 경기 북부권 14개 시·군
- *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파주, 남양주, 가평, 양평, 구리, 하남, 광주, 고양, 김포

사. 위탁예정 기간 : '27. 1. 1. ~ '29. 12. 31. (3년)

아.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적정('26. 7. 31.)

3. 검토의견

■ 동의안 제출취지

-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의 차기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쉼터 및 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경기 북부권 14개 시·군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취업·생활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차기 위탁예정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949,500천원(국비 163,500천원, 도비 786,000천원)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3. 5. 28.]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1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방법 및 사업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위탁의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6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탁 사무 심의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도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행정능률 향상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사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1:1 맞춤형 사례관리, 취업·인턴십 연계 및 자산형성(자립두배통장) 등을 제공하는 종합 복지 서비스임. 이는 단순

한 시설 유지관리가 아닌 대상 청소년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 및 개별 사례관리가 필수적인 사무로서, 청소년 보호·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기준에 부합함.
- 아울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절차로서 2026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26. 7. 31.)를 거쳐 '적정'으로 의결되는 등 행정적 사전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됨.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기준)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필요성) 검토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은 북부권 14개 시·군을 관할하며, 쉼터 및 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생활 밀착형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전문 복지시설임. 이를 도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현장 전담인력(8명) 확보에 따른 조직 관리상 부담이 따르고, 공무원의 순환보직 체계로는 위기 청소년과의 지속적인 유대감 유지 및 긴급 상황 대응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반면, 청소년 전문법인·단체는 청소년 상담·지도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과 축적된 현장 사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청소년과의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를 신속히 형성할 수 있음. 아울러 의료기관, 법률자문, 직업훈련처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민간 자원 연계망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행정조직을 확대하지 않고도 대상 청소년의 복합적인 욕구에 맞춘 고도화된 자립지원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는 데 훨씬 효과적임.
- 실제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29명의 자립준비청소년에게 총 1,733건의 맞춤형 지원서비스(상담 570건, 생활 501건, 주거 181건, 건강 156건, 자립 216건 등)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성과평가 '우수'를 획득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기반 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취약 청소년에 대한 복지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 있는 자립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계속 운영하는 것은 타당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기준)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위탁의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6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탁 사무 심의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고용·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6. 시·군 간 균형 분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협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제12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경기도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제4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